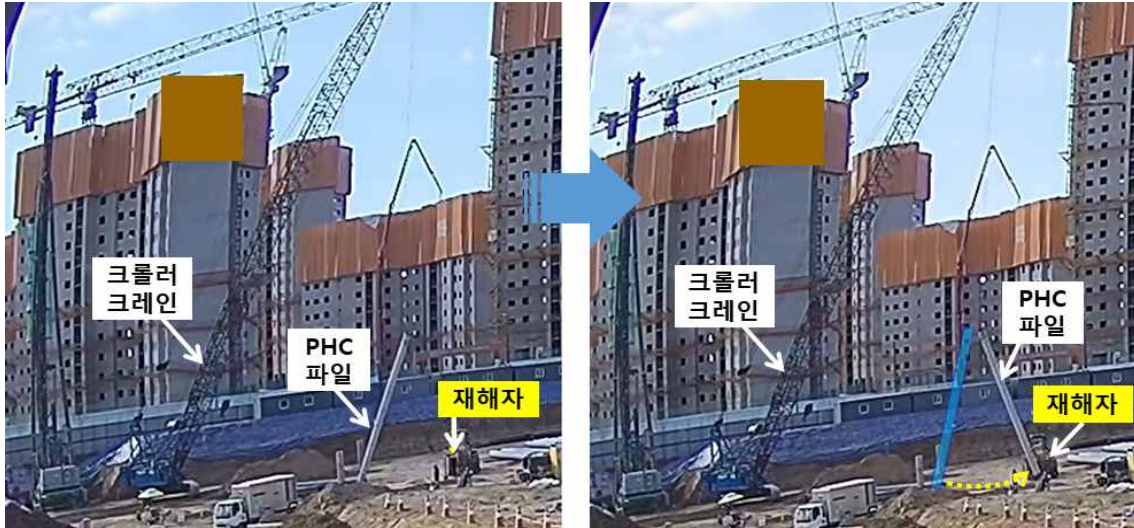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3. 3. 15.(수) 09:02경, 경기도 □□시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파일 항타공사 주변으로 걸어가던 중 크롤러 크레인이 바닥에 놓여있던 PHC파일*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PHC파일이 흔들리며 재해자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PHC파일 인양 작업 시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미흡**
 - 작업계획서 작성 시 세장(細長, 가늘고 긴)하고, 무거운 자재(PHC파일)의 특성과 작업방법 및 작업반경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, 해당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, 신호수의 신호에 의한 장비 운전이 실시되지 않았음
- 위험성평가 실시 미흡**
 -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, 해당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출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하나, 최초 평가에서 검토된 위험요인(파일근접 작업 시 충돌)이 수시평가 시 누락되는 등 해당 위험요인이 검토되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의 수립·이행·확인 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PHC파일 인양 작업 시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**
 - 크롤러 크레인의 붐을 선회하며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PHC파일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검토 및 인양하는 파일 길이 이상의 범위를 추가적인 작업반경으로 설정하도록 하고, 장비 사양 등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작업계획서 내용 변경 후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며,
 - 작업지휘자를 지정·배치하여 안전조치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
- 신호체계 구축 및 건설기계 접촉 방지 조치 실시**
 -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건설기계와 접촉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구축하고, 건설기계는 구축된 신호·유도 등에 의해 운행되도록 조치·실시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